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항공보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외 ‘코로나19 감염증’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콜드체인(Cold Chain 저온유통체계) 바이오시장은 매년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음. 국내 제약업계도 바이오 의약품 생산 및 수출량이 향후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항공분야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면제함으로써 행정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제약업계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바이오 의약품’ 특별보안검색 대상 포함 (안 제13조제3항제1호의2)

- 1) 감염증 치료제 또는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절차를 면제하기 위해 특별보안검색 대상으로 지정

4. 주요토의과제

바이오 사업화 촉진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상정(‘20.11.1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산업자원통산부(바이오융합산업과)와 협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19. ~ 12. 28.)

3) 행정규제 : 규제 폐지

대통령령 제 호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보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감염증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① · ② (생략)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 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 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혼 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감염증 치료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u> 2. ~ 5.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보안과	
연 락 처	(044) 201 - 4236, 4238